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상기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542
----------	-----

발의연월일 : 2019년 3월 29일
발 의 자 : 장상기 의원 (1명)
찬 성 자 : 김호평, 박순규, 김동식,
김제리, 김화숙, 고병국,
김정환, 이병도, 문장길,
이영실, 이광성, 양민규,
채유미 의원 (13명)

1. 제안 이유

- 장애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각급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 가. 장애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특수학급 설치에 대한 교육감 등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나.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함(안 제4조).
- 다. 특수학급의 설치 기준을 규정함(안 제5조).
- 라. 특수학급 설치 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규정함(안 제6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나. 예산 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각급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학생”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를 말한다.
2. “특수학급”이란 「특수교육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장애학생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을 말한다.
3. “각급학교”란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 “차별”이란 「특수교육법」 제4조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특수학급의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장애유형이나 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장애학생에 관한 교육감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장애학생이 가진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특수학급 설치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특수학급의 설치 등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특수학급 설치에 따른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학생의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특수학급 설치를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특수학급의 설치기준)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특수교육법」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장애학생에 대한 입학배정을 한 경우
2. 장애학생 및 장애학생의 학부모가 서울시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및 각급학교에 입학·전학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특수학급을 설치할 경우 각급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예산 등 지원) ① 교육감은 특수학급의 시설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특수학급 설치에 대한 학생·학부모 및 교직원의 인식 개선을 위해 장애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